

94579
615046

Mh.a.4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의정서 가입

1992. 6.

외무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의정서 가입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의정서 가입

1992. 6.

외 무 부

목 차

1. 협약 및 의정서 개관	1
2. 가입의 의의	2
3. 주요골자	3
4. 유보조항	5
첨부 : 가. 당사국 현황	9
나. 협약규정과 국내법규정 대비	11
다. 협약의 적용지역에 관한 각국 선택내용	26
라. 주요당사국 유보내용	27
마. 협약전문(국·영문)	41
바. 의정서전문(국·영문)	99

대한협 협정서 이우지 이명환
입자 사정인

1997. 8

부 무 이

1. 협약 및 의정서 개관

정식명칭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채택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헌장 및 세계인권선언에 근거하여 난민에게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가능한 한 부여하기 위한 목적 ○ 51.7.28. 제네바개최 유엔 난민 및 무국적자 지위에 관한 전권위원회에서 채택 ○ 54.4.22. 발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 51.1.1.전에 발생한 난민에게만 적용되는 시간적 제한을 철폐하고, 51.1.1.이후 발생한 난민에게도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 ○ 67.1.31. 뉴욕개최 유엔 총회에서 채택 ○ 67.10.4. 발효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본문 46개조 및 부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에 대한 대우와 보호 의무 규정 -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으로 추방송환 금지 - 난민문제에 있어 유엔고등판무관(UHCR)에 협력과 편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및 본문 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제2조에서 제34조까지 적용하고 협약의 시간적 제한 철폐(의정서 1조)
당사국 현황 (92.5. 현재)	107 개국	108 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과 의정서에 모두 가입한 당사국수 104개국 * 아주지역에서는 일본·중국·필리핀이 가입 	

참고 : 협약·의정서상 "난민"의 정의

... 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 및 이들 사건의 결과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2. 가입의 의의

가. 난민의 보호에 관한 세계보편적 성격의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정부가 취하여온 난민보호 정책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기관인 국제연합 난민 고등판무관과의 협력을 증진시킴.

나. 우리나라가 1962년 이미 가입한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과 함께 우리나라의 인권보호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기회로 삼음.

다. 난민사건처리에 있어서 조약을 직접 원용하여 우리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함.

3. 주요골자

가. 협약의 주요골자(전문, 본문 46개조 및 부속서로 구성)

(1) 난민의 기본적권리 보호 및 추방제한

- 난민의 체재국 법령 준수 의무(제2조)
- 인종·종교·출신국에 따른 차별적인 적용금지(제3조)
- 불법거주난민의 자진신고시 처벌금지 및 제3국 입국 주선(제31조)
- 합법거주난민에 대한 국가안보와 공공질서의 이유외의 추방금지(제32조)
- 생명, 자유가 위협받는 지역으로 추방 및 송환금지(제33조 1항)
- 단, 전시등 예외적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관련, 난민에 대한 잠정적 조치 허용(제9조)

(2) 경우에 따라 난민에게 적절한 대우 부여

-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
 - 종교행위와 자녀의 종교교육의 자유(제4조)
 - 저작권 및 공업소유권등(제14조)
 - 재판을 받을 권리(제16조)
 - 초등교육(제22조 1항)
 - 공공구제(제23조)
 - 노동법제와 사회보장(제24조 1항)

- 수수료 징수 (제25조 4항)
- 조세 기타 공과금 부과 (제29조 1항)
-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중 가장 유리한 대우
 - 비정치·비영리단체 및 노동조합 관련, 합법체재 난민에게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중 가장 유리한 대우 부여 (제15조)
- 일반 외국인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 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 임대차 및 기타 계약시 (제13조)
 - 자영업 및 자유업 종사의 경우 (제18조 및 제19조)
 - 주거의 제한시 (제21조)
 - 초등교육을 제외한 교육 (제22조 2항)
- 외국인과 동등한 대우
 - 협약상 보다 유리한 대우의 규정이 없는 경우 (제7조 1항)
 - 주거선택과 이전의 자유 (제26조)
 - 외국인에 대한 수수료 부과시 (제29조 2항)
- (3) 국제 협력 의무
 -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 UNHCR) 사무국과 협력 (제35조)
 - 유엔사무총장에게 협약적용에 관한 법령을 송부 (제36조)

(4) 기타

-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시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 (제38조)
- 협약 일부조항(난민간 차별금지, 재판받을 권리, 추방·송환금지, 국제 협력 의무)의 유보 금지 (제42조)

나. 의정서의 주요골자 (전문 및 11개조로 구성)

-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조 내지 제34조 적용 (제1조 1항)
- (2) 난민의 정의에 있어 1951.1.1.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한 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협약상의 시기적 제한을 철폐 (제1조 2항)
- (3)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 (UNHCR) 사무국과 협력 (제2조)
- (4) 의정서의 해석·적용에 관한 분쟁시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 (제4조)
- (5) 협약 제1.3.4.16조 1항, 33조의 유보 금지 (제7조 1항)

4. 유보사항

가. 협약 적용 장소에 대한 선택

- 내용 : 협약 제1조 A에 규정된 "195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용어는 "1951년 1월 1일 이전에 유럽 또는 기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 이유 : 협약 제1조 B의 규정에 따르면 협약의 장소적 적용에 대하여 "유럽에서 발생한 사건"에 국한할 것인지

"유럽 또는 기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에도 적용할 것인지
각 계약국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나라의 난민
보호의지를 더욱 적극적으로 천명한다는 차원에서 장소적
적용 범위를 확대

나. 유보 조항

- 협약 제7조 : 3년거주 난민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으로
부터의 면제
- 유보이유 : 국가배상법 제7조, 외국인 토지법 제2조,
공인 회계사법 제4조, 변호사법 제6조 2항, 특허법
제25조, 의장법 제4조 등 국내법은 우리국민에게
일정한 대우를 부여하는 외국의 국민에게 대해 국내에서
유사한 대우를 부여하는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3년거주 난민에게 상호주의를 면제하는 협약규정은 이에
저촉

첨 부

가. 당사국 현황

(1) 협약 당사국현황(92.5. 현재 107개국)

- 아 시 아 : 중국, 일본, 필리핀
- 아 프리 카 : 알제리, 앙골라,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차드, 콩고, 코트디브와르, 적도기니, 이디오피아, 가봉, 잠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칼, 말리, 말라위, 모로코, 모잠비크, 니제, 나이제리아, 루안다, 상토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레온, 소말리아, 토고, 우간다, 탄자니아, 자이르, 잠비아, 짐바브웨
- 유 럽 : 오지리, 벨지움,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핀란드, 불란서, 독일, 희랍, 교황청, 헝가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태리,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화란,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어키, 영국, 유고슬라비아
- 북 미 : 캐나다
- 중 미 : 벨리세,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혼두라스, 과테말라, 아이티, 자마이카, 니카라과, 파나마, 수리남

- 남 미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 중 동 : 지부티,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 모리타니아, 수단, 튀니지, 예멘
- 오세아니아 : 호주, 휘지,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투발루

- (2) 의정서 당사국(92.5.현재 108개국)
- (3) 협약과 의정서에 모두 가입한 국가 : 104개국
- (4) 의정서에만 가입한 국가 : 미국, 베네수엘라, 카브베르데, 스와질랜드
- (5) 협약에만 가입한 국가 : 마다가스칼, 모나코, 사모아

나. 협약규정과 국내법규정 대비

협약규정	국내법규정	비고
제2조 난민의 체재국 법령 준수 의무		
제3조 난민에 대한 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에 의한 차별적용 배제		
제4조 종교행위 및 자녀의 종교교육 자유에 있어서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		
제5조 협약과 관계없이 난민에게 부여되는 권리 및 이익보호		
제6조 '동일한 사정하'에서의 용어 정의		
제7조 (상호주의로 부터의 면제)		
1. 체약국은 난민에게 외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부여		
2. 3년간 거주 난민에게 입법상 상호주의로 부터 면제	○ 국가배상법 제7조 외국인의 피해자인 경우 상호보증이 있을 때에 한하여 적용	국내법중 상호주의를 규정한 법률과의 저촉을 피하기 위한 입법조치 또는 등 관련 협약조항의 유보 필요

협약 규정	국내법 규정	비고
3. 난민에게 이미 부여한 권리·이익을 상호주의 적용없이 협약 발효와 함께 계속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토지법 제2조 외국에서 아국인의 토지상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등 외국의 국민에 대하여 국내 토지상 권리제한 가능 ○ 공인회계사법 제4조 한국정부가 부여한 공인회계사자격을 인정한 국가에서 공인회계사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국내 직무 허용 ○ 변호사법 제6조 2항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한국 국민에 대하여 변호사 자격을 인정, 개업을 허용하는 등 경우에 한하여 등 외국 변호사에 대한 국내 개업허가 ○ 특허법 제25조 한국 국민에게 특허권을 인정하는 당사국 국민에게만 특허권 인정 ○ 의장법 제4조 상기 특허법 제25조를 의장등록에 준용 	

협약 규정	국내법 규정	비고
4. 2,3항 이외의 권리·이익을 상호주의의 적용없이 난민에게 부여할 가능성 고려		
5. 2,3항의 권리·이익을 여타 조항(13,18,19, 21,22조) 및 협약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권리·이익에 적용		
제8조 국적만을 이유로 난민에 대한 예외적 조치 금지		
제9조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예외적 잠정조치	○ 헌법 제76조 (비상조치권) ○ 헌법 제77조 (계엄선포)	
제10조 (거주의 계속)		
1. 2차대전중 강제이동되어 체약국 영역에 거주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영역내에서 거주한 것으로 간주		
2. 2차대전중 강제퇴거되었다가 협약발효일 이전에 거주차 강제퇴거된 체약국 영토에 귀환한 경우 강제퇴거 전후의 기간을 계속된 하나의 기간으로 간주		

협약 규정	국내법 규정	비고
제11조 체약국 기국 선박 승선근무 난민에 대한 자국 영토상의 정주 및 타국내 정주를 위한 여행증명서 발급 또는 자국 영역에의 입시 입국허가에 호의적 고려		
제12조 (개인적 지위)		
1.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는 국가의 법률 에 의거 개인적 지위 규율		
2. 개인적 지위에 따르는 권리는 체약국 법률에 정한 절차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존중		
제13조 동산과 부동산의 소유권과 그 취득 또는 임대차 및 기타계약에 있어서 외국인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 부여		
제14조 일 체약국 에서 저작권 및 공업 소유권은 동 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보호를 받고 타 체약국에서는 상주거소 국가의	○ 저작권법 제3조 2항 외국인의 저작권에 관하여 조약에 규정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 처음으로 그 저작물을 발행한	난민을 포함한 외국 인에 대하여 국내 법상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예술 상의 권리 및 공업 소유권도 보호

협약 규정	국내법 규정	비고
국민과 동일한 보호를 받음.	자에 한하여 본 법의 보호를 받음 ○ 특허법 제192조 2 한국국민 또는 한국 내에 주소와 영업소 가 있는 외국인은 특허청장에게 특허 협력조약 제2조의 국제출원을 할 수 있음. ○ 실용신안법 제36조 2항(국제출원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	
제15조 자국내 합 법체제 난민의 비정치 및 비영리 단체와 노동조합에 대하여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국민에게 부여하 는 대우중 가장 유리 한 대우 부여	노동조합법 제11조 조합 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종교·성별·정당 또는 신분에 의한 차별 을 받지 아니함.	난민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차별금지 보장
제16조 (재판을 받을 권리)	○ 민사소송법 제53조 외국인은 본국법에 의하여 소송능력이 없더라도 한국법률에 의하여 소송능력이 있는 경우 소송 능력 자로 간주	난민을 포함한 외국 인에게 소송능력을 인정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부여 되고 법해석상 국선 변호인 선임등 법률 적 도움에 있어서 내국인과 동일취급
1. 재판을 받을 권리		
2. 재판을 받을 권리에 있어서 상주거소국가 국민과 동일한 대우 향유	○ 형사소송법 제33조 다음 경우에 국선 변호인 선정 ...5. 피고인이 빈곤 기타사유로	

협약 규정	국내법 규정	비고
3. 상주거소 국가이외의 국가에서 상주거소 국가 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 향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단, 피고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 한함. ○ 형사소송법 제282조 (필요적 변호), 제283조(국선변호인)	
제17조 (임금이 지급되는 직업)		
1. 합법체제 난민에게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중 가장 유리한 대우 부여		
2. 고용에 있어서 외국인 고용에 부과하는 제한조치는 동 조치로부터 면제된 난민, 3년이상 거주한 난민, 배우자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난민, 그 나라국적을 가진 자녀가 있는 난민에게는 적용치 않음.	출입국관리법 제15조 2항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금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고용될 수 있는 체류자격"에 관한 규정에서 동 취지반영 필요
제18조 난민이 자영업을 갖는 경우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		

협약 규정	국내법 규정	비고
제19조 (자유업)		
1. 합법적 체제 난민의 자유업종사 경우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인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		
2. 관할영역내의 난민 정주를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경주		
제20조 물자배급시 난민에 대하여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		
제21조 주거에 관한 사항의 규제시 합법체제 난민에게 유리하며,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		
제22조 (공공교육)		
1. 초등교육에 있어서 난민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	교육법시행령 제96조의 2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자녀로서 국내의 학교에 최초로 입학 또는 전학하는 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서류 신고증을 거주지 관할	외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내국민과 같이 교육을 받을 기회 부여
2. 기타교육과 편의제공에 있어서 유리하고,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 보다 불리하지		

협약 규정	국내법 규정	비고
<p>않은 대우를 부여</p> <p>제 24조 (노동법제 및 사회보장)</p> <p>1. 합법체제 난민에게 자국민과 동등한 대우 부여</p> <p>(a) 법령과 행정당국의 통제를 받는 한 보수, 근로시간, 시간외 근로, 유급 휴가, 가내근로의 제한, 최저고용, 연령, 견습과 훈련, 여성과 연소자의 근로 및 단체교섭의 이익향유</p> <p>(b) 사회보장(산업재해, 직업병, 출산, 질병, 폐질, 노령, 사망, 실업, 가족 부양등)</p>	<p>해당학교의 장에게 제출 함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에 관한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봄.</p> <p>○ 근로기준법 제5조 국적등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리를 하지 못함.</p> <p>○ 노동조합법 제11조 조합원은 인종... 또는 신분등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p> <p>○ 의료보험법 제73조의 3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은 본인의 원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p> <p>○ 산업재해보험법 제3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p> <p>○ 근로기준법 제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리를 하지 못함.</p>	<p>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등이 국적, 인종등에 의한 차별 대우 금지</p> <p>난민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의료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혜택가능</p>

협약 규정	국내법 규정	비고
<p>2.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시의 보상은 권리취득자의 거주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p> <p>3. 사회보장에 관한 체약국 협정의 이익을 동 협정서명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조건에 따라 난민에게 부여</p> <p>4. 체약국과 비체약국간 3항의 협정과 유사한 협정의 이익을 가능한 한 난민에게 부여 고려</p> <p>제 25조 (행정적 지원)</p> <p>1. 난민의 권리행사시 거주국의 원조 부여 의무</p> <p>2. 국가당국의 외국인에 대한 발급문서를 난민에게 발급할 의무</p> <p>3. 난민에 대한 2항 발급문서의 효력</p> <p>4. 상기 사무시 자국민에게 과하는 것과 동일한 수수료 징수</p> <p>5. 이 조의 제27조와 28조 적용방해 배제</p>		

협약 규정	국내법 규정	비고
제 26조 합법체제 난민에게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인에게 적용하는 규제에 따라 거주선택과 이동의 권리를 부여		
제 27조 영역내 난민에게 유효한 신분증명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관리법 제 27조 1항 외국인입국후 90일 이내 거류신고를 하여야 함. ○ 출입국관리법 제 30조 1항 거류지 관할사무소장은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거류신고를 받은때에 거류신고증을 교부 	거류신고를 할 수 없는 불법입국 난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 발급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써 해결
제 28조 (여행증명서)	여권법 시행령	
1. 합법체제 난민에게 예외적 상황이 아닌 한 출국용 여행증명서 발급, 영역내의 다른 난민에게도 여행증명서 발급을 호의적으로 고려	여권법 시행령 제 16조 여행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함. 1-4. (생략) 5. 피난민 6. (생략)	
2. 기발급한 여행증명서의 효력인정		
제 29조 (재정상의 부과금)		
1. 자국민에게 부과하지 않는 조세 또는 자국민에 대한 것보다		

협약 규정	국내법 규정	비고
고율의 조세 부과 금지		
2. 외국인에 대한 수수료 부과 관련 법령을 난민에게 적용가능		
제 30조 (자산의 이전)		
1. 난민의 반입자산은 정주를 위해 타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법령에 따라 허가		외환관리법의 해석상 운영으로 협약 규정 이행가능
2. 난민 자산 이전 허가 신청을 그 소재지를 불문하고 호의적으로 고려		
제 31조 (피난국에 불법으로 있는 난민)		
1. 생명 또는 자유가 위협받고 있는 영역으로부터 불법입국한 난민이 자진출두하여 등 불법입국과 체제의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형벌 면제	출입국관리법 제 82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생략) 2. 제 7조 (외국인의 입국) 또는 제 11조 (입국심사)의 규정에 위반한 자 3-4. (생략) 5. 제 15조(체류) 제 1항 또는 제 16조(활동	난민이 아국에 불법입국 또는 체제할 경우 이들에 대한 협약상의 처벌금지 조항과 출입국관리법상의 벌칙조항은 상호 저촉될 수도 있으나 벌칙 해당 난민에 대하여 기소유예 등 검찰권 발동의 유보라는 법운영상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음.

협약 규정	국내법 규정	비고
<p>범위)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p> <p>6-10. (생략)</p> <p>출입국관리법 제18조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한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거소 또는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p>	<p>출입국관리법 제18조 법무부장관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한국의 중요한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거소 또는 활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다.</p>	<p>여사한 외국인의 활동에 대한 제한은 협약규정에 따른 필요한 제한이라고 볼 수 있음. 난민에 대한 편의제공 등 일시 비호는 행정 조치로 실시</p>
<p>제32조 (추방)</p> <p>1. 국가안보와 공공질서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합법체제 난민의 추방금지</p> <p>2. 난민추방은 법률절차에 따른 결정에 따라 행하여지고,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방을 당할시 난민의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한 소명자료를 제출 인정</p> <p>3. 난민의 합법적인 타국가 입국을 위한 타당한 기간부여와 동기간동안의 체약국의 국내조치권 유보</p>	<p>출입국관리법 제45조 (강제퇴거의 대상자)</p> <p>출입국관리법 제6장(강제퇴거)에 강제퇴거의 대상자, 조사, 수용, 심사 및 이의신청,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수용의 일시해제 등으로 규정</p>	<p>출입국관리법이 규정하는 강제퇴거의 대상은 협약이 규정하는 공공질서유지등을 위한 사유로 볼 수 있음.</p> <p>난민도 외국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협약규정에 합치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절차를 적용 받음.</p>

협약 규정	국내법 규정	비고
<p>제33조 (추방 또는 송환의 금지)</p> <p>1. 생명과 자유가 위협 받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 금지</p>	<p>출입국관리법 제62조 2항1(국적 또는 시민권을 부여한 국가의 강제 송환) 규정에 의하여 송환할 수 없는 때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에 송환할 수 있음.</p> <p>1. 한국입국전 거주국가</p> <p>2. 출생지국</p> <p>3. 입국을 위해 선박등에 탔던 항구가 속하는 국가</p> <p>4. 본인이 송환되기를 희망하는 국가</p>	<p>출입국관리법 제62조 2항 4에 의거 본인이 송환되기를 희망하는 국가로 송환하는 행정운용을 통하여 조치 가능</p>
<p>2. 안보에 위협하거나 중대한 범죄로 인한 유죄선고를 받은 난민의 이 규정 이익의 요구 배제</p>		
<p>제34조 난민의 동화와 귀화 장려</p>		
<p>제35조 (국제연합과 국내당국과의 협력)</p> <p>1. 당사국의 UNHCR 사무국과의 협력의무 및 UNHCR의 의정서규정 적용 감독에 대한 편의제공 의무</p>		

협약 규정	국내법 규정	비고
<p>2. UNHCR 사무국에 난민의 상태, 의정서의 이행, 난민에 관한 현행 및 장차 시행될 법령에 관하여 요구되는 정보와 통계자료 제공</p> <p>제36조 의정서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법령을 UN 사무총장에게 송부</p> <p>제37조 의정서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시 분쟁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ICJ에 분쟁을 부탁</p> <p>제39조 가입개방</p> <p>제40조 적용지역 조항</p> <p>제41조 연방 또는 비단일국가에 대한 규정</p> <p>제42조 (유보와 선언)</p> <p>1. 협약 제1,3,16(1) 및 제33조 제36조 내지 46조의 유보금지</p>		<p>협약 제42조(협약 제1,3,4,16(1), 33, 36내지 46조에 따른 유보를 철회하지 아니하는 한 등 유보는 의정서에 따른 의무에 관하여도 적용</p>

협약 규정	국내법 규정	비고
제43조 (발효)		
제44조 (폐기)		
제46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의한 통보)		

다. 협약의 적용지역에 관한 각국 선택내용

- (1) "유럽에서 발생한 사건"에 적용 : 6개국
 - 룩셈부르크, 헝가리, 마다가스카르, 몰타, 모나코, 터키
- (2) "유럽 또는 기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적용 : 101개국
 - 상기 6개국을 제외한 당사국 전부

라. 협약에 대한 주요당사국 유보내용

(1) 협약 유보

국 명	선언 또는 유보요지
앙골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앙골라 법령과 배치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7, 13, 15, 18, 24조는 내국인에게 보다 광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 불가 - 제 8, 9조 관련, 필요시 국익과 주권 수호를 위해 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 채택 가능 ○ 제 17조 관련, 앙골라가 특별 협력협정을 체결한 국가국민에게 조약상 부여하는 권리는 포함치 않으며, 제 2항은 권고사항으로만 인정 ○ 제 26조 관련, 국가 또는 국제질서 유지상 필요시 난민의 주거지역 지정·이동 및 제한과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리 유보
오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7조 1항 및 2항은 권고사항으로만 인정 ○ 제 22조 1항은 사립국민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음.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혜국 국민대우 조항은 벨기에가 관세동맹, 경제 또는 정치적 협정을 체결한 국가국민에게 부여하는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 제 15조 적용유보(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정도의 결사의 자유만 인정)
보츠와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7, 17, 26, 31, 32, 34조 및 제 12조 1항 유보
브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에게는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대우 적용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23, 24조 내국인대우 관련,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난민은 영주목적으로 입국한 경우만을 의미
칠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34조 귀화 관련,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대우 적용

국명	선언 또는 유보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7조 2항 a 취업상 상호주의 면제에 필요한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제17조 2항 c 자녀관련, 난민은 사망한 배우자가 칠레국민이었던 자에 한함. ○ 추방명령 준수기간은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되는 기간보다 장기간의 기간 불인정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6조 재판을 받을 권리 적용 유보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7조 1항 난민취업시 최혜국국민대우 규정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국민에게 부여하는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에쿠아도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5조 결사의 자유관련, 외국인은 정치단체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국내법령의 제한을 받음
이집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2조 1항은 거소결정에 관한 국내법과 상치되기 때문에 유보 ○ 사회복지에 관한 제20, 22(1), 23, 24조는 권고 사항으로만 인정
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 9조에 의해 전시, 비상시에 난민에 대한 특별 조치 채택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 ○ 제25조 궁핍한 자에 대한 원호규정 유보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혜국국민대우 규정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국민에게 부여하는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 제7조 2항 상호주의 면제규정 유보 ○ 제8, 24(1)(b) 및 24(3)조는 권고 사항으로만 인정 ○ 제12조 1항은 국적국법에 따라 인적지위를 부여하는 핀란드 섭외사법 원칙에 따라 유보 ○ 제25, 28(1)조 유보

국명	선언 또는 유보요지
불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9조 재정부과금 관련, 난민복지, 정착, 원호에 필요한 Nansen tax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 ○ 제17조는 외국인 고용 쿼타설정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유보
히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6조 이동의 자유관련,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유지상 이유로 예외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 유보 ○ 제17조 고용관련, 최혜국국민대우가 아닌 일반 외국인 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과테말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및 의정서 규정이 과테말라 헌법 및 국내법상 공공질서 규범과 상충되는 경우 부적용 ○ "가능한한 최선의 대우"란 표현은 과테말라가 중미국가 또는 기타국가 국민에게 특별협정을 통해 부여하는 특혜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교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규정은 교황청의 특별한 성격과 입출국·체류를 규정하는 교황청 법규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적용
이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혜국국민대우 조항은 이란이 지역, 관세, 경제 또는 정치적 협정을 체결한 국가국민에게 부여하는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 제17, 23, 24, 26조는 권고사항으로만 인정
아일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2조 1항 "공공질서"와 제32조 2항 "due process of law에 따라서"라는 표현은 "공공정책"과 "법적 절차에 따라서"라는 의미로 해석 ○ 제17조 고용 및 제29조 1항 소득세 관련, 일반 외국인과 동등한 대우 부여 ○ 제25조 원조관련, 아일랜드법에 따라 이행가능하고 허용되는 한도내에서만 효력 부여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 12조 유보

국 명	선언 또는 유보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8조는 여행증명서 발급을 장관 재량으로 규정한 여권법 제6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제30조에 따른 자산이전 허가는 재무장관이 재량으로 발급
자마이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8, 9조에 의해 전시, 비상시에 난민에 대한 특별조치 채택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 ○ 제17조 2항 취업상 상호주의 면제에 필요한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 제24조 1, 2항 사회보장과 제25조 3항 원조는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도내 시행
리히텐슈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7조 고용관련 일반 외국인과 동일한 대우 부여 ○ 제24조 사회보장 조항은 국내법에 합치되도록 적용
룩셈부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혜국국민대우 조항은 룩셈부르크가 지역, 관세, 경제 또는 정치적 협정을 체결한 국가국민에게 부여하는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마다가스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조 1항은 마다가스칼이 협력협정을 체결한 국가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를 부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 ○ 제8, 9조는 전시, 비상시에 국적을 이유로 난민에게 특별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 제17조는 외국인 고용 쿼타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의무에 관한 국내법규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말라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 13, 15, 19, 22, 24조는 권고사항으로만 인정 ○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난민이 취업허가 취득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하며, 일반 외국인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유보

국 명	선언 또는 유보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6조 관련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난민 거주자를 지정하고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유보 ○ 제34조 귀화에 있어 일반 외국인과 동등한 대우만 부여
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 8, 9, 11, 14, 17, 18, 23, 27, 28, 31, 32, 34조 유보
모나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2), 15, 22(1), 23, 24조는 권고사항으로만 인정
모잠비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 22조는 권고사항으로만 인정 ○ 제17, 19조는 취업허가 획득에 특혜를 부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 ○ 제15조 결사의 자유 관련 내국인이 누리는 권리 이상 특혜를 부여한 것은 아니며, 국가안보를 이유로 제한 가능한 것으로 해석 ○ 제26조는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난민 거주지를 지정하고 이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유보
화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혜국국민대우 조항은 화란이 지역, 관세, 경제 또는 정치적 협정을 체결한 국가 국민에게 부여하는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 제26조 관련 공공이익을 위해 특정한 그룹의 난민의 거주지를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유보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4조 2항 산업재해 보상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효력 인정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7조 1항 난민취업시 최혜국국민대우 규정은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과 맺은 조약에 의해 부여되는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파푸아뉴기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7(1), 21, 22(1), 26, 31, 32, 34조 유보

국 명	선언 또는 유보요지
폴란드	○ 제24조 2항 유보
포르투갈	○ 최혜국국민대우 규정은 포르투갈이 브라질 국민에 대해 부여하는 지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
루안다	○ 공공정책(공공질서)을 이유로 난민의 거주지를 지정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 할 권리 유보
시에라레온	○ 제17조 2항 유보 및 제17조 전체가 권고사항인 것으로 해석 ○ 제29조 유보
소말리아	○ 식민지배하 소말리아로 부터 강제이주당한 사람의 국민적 지위, 정치적 염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
스페인	○ 최혜국국민대우 조항은 포르투갈, 안도라, 필리핀, 남미, 기타 국가국민에게 조약상 부여하는 권리는 포함치 않는 것으로 해석 ○ 제8조는 권고사항으로만 인정 ○ 제12조 1항 유보 ○ 제26조는 특정 난민의 거주지에 관한 특별 조치 권한 유보
스웨덴	○ 최혜국국민대우 규정은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기타 국민에게 조약상 부여하는 특혜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 제8조는 권고사항으로만 해석 ○ 제12조 1항은 국적국법에 따라 인적지위를 부여 하는 스웨덴 섭외사법 원칙에 따라 유보 ○ 제17(2), 24(1)(3), 25조 유보
터키	○ 시기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아내 터키계 소수 민족은 난민 지위인정

국 명	선언 또는 유보요지
	○ 터키 내국민보다 유리한 대우는 불인정
우간다	○ 제7조 유보(취업관련, 국내안보, 경제, 사회적 필요성을 이유로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자유 재량권 유보) ○ 제8, 9조는 권고사항으로만 인정 ○ 협약 제13조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박탈 가능 ○ 협약 제15조의 난민에 대한 권리는 공공이익을 위하여 철회가능 ○ 협약 제16조 2, 3항은 동일한 상황에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것이 아닌것으로 해석 ○ 협약 제17조는 동부아프리카 공동체(East African Community), 아프리카 단결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회원국의 국민이 누리는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 협약 제25조 관련 난민을 위한 경비는 UNHCR이 부담하지 않는 한 우간다가 지불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 ○ 협약 제32조의 추방은 제33조 규정을 침해하지 않는 한 사법절차 없이 무제한 행사가능
영국	○ 제8, 9조 관련 전시, 비상시 국적을 이유로 난민에 대한 특별조치 채택권리 유보 ○ 제17조 2항 취업상 상호주의면제에 필요한 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 제24조 1항 사회보장 및 제25조 원조는 국내법에서 허용되는 한 부여
잠비아	○ 제17조 2항 유보 및 제17조가 난민에게 일반 외국인에 대한 대우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 ○ 제22조 1항은 권고사항으로만 인정

국 명	선언 또는 유보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6조 관련 난민거주지 지정권한 유보 ○ 제28조 관련 여행증명서 발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유보
짐바브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7조 2항 유보 및 제17조가 난민에게 일반외국인에 대한 대우보다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 ○ 제22(1), 23, 24조 권고사항으로만 인정 ○ 제26조 관련 난민거주지 지정권한 유보

(2) 의정서 유보

* 협약 유보와 관련한 의정서 제7조 2항

"협약 제42조에 따라 협약의 당사국이 협약에 대하여 행한 유보는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이 의정서에 따른 의무에 관하여서도 적용된다."

국 명	유보 또는 선언요지
앙골라	○ 의정서 해석관련, 분쟁해결에 관한 제4조 유보
보츠와나	○ 제4조, 협약 제7, 17, 26, 31, 32, 12조 1항 유보
부룬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제22조는 사립교육이 아닌 공공교육 및 난민에 대한 최혜국 대우라는 전제하에 수락 ○ 협약 제17조(1)항 및 (2)항은 권고사항으로 수락하며, 지역, 관세, 경제 또는 정치적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대우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음.

국 명	유보 또는 선언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제26조는 난민이 자신의 출신국에 인접한 지역에서 거주지를 정하지 않고 자유이주권 행사시 자신의 국적국을 전복하는 성격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수락
칠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제34조 관련, 외국인에게 허용하는 편의 이상의 대우 부여불가 ○ 협약 제17조 2항(a)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협약 제17조 2항(c)는 사망한 배우자가 칠레국민이었던 자에 적용 ○ 난민에게 일반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추방기간보다 장기간의 추방기간 불인정
중국	○ 제4조 유보
콩고	○ 제6조 유보
엘살바도르	○ 제4조 유보
이디오피아	○ 협약 제8, 9, 17(2), 22(1)은 권고사항으로만 간주
가나	○ 분쟁해결 관련 제4조 유보
과테말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가 허용된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과 국내법에 저촉되는 경우 유보행사 ○ 협약과 의정서상 "가능한 한 최선의 대우"라는 표현은 과테말라가 중미국가 또는 기타국가에게 조약상 부여하는 권리를 포함치 않음.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제8, 12조 유보 ○ 협약 제28조는 여권법 제6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협약 제30조에 따른 허가는 재무장관 재량 발급
자마이카	○ 협약 제8-9조는 전쟁등 예외적 상황에서 난민의 국적이 문제된 경우 국익을 위한 조치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

국 명	유보 또는 선언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제17조 2항, 24조 및 25조 1, 2, 3항의 규정은 국내법이 허용하는 한 시행 ○ 분쟁해결에 관한 제4조 유보
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제7조 2항, 14, 23, 27, 28조 유보 ○ 협약 제7조 3, 4, 5항, 협약 8, 9, 11, 17, 18, 31, 32, 34조는 국내사정에 따라 적용
화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혜국국민대우는 화탄이 지역, 관세, 경제 또는 정치적 협정을 체결한 국가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음. ○ 협약 제26조 관련 공공이익상 특정난민에 대한 거주지 지정권한 유보
페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 1항 및 제2조 관련 의무는 페루국가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행할 것을 선언
포르투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적용제한 없이 적용 ○ 난민에 대한 최혜국 대우는 브라질 국민 또는 영연방 형태의 관계에서 부여하는 외국인에 대한 대우를 뜻하는 것이 아닌것으로 해석
투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해결 관련 제4조는 투안다의 사전동의를 전제로 수락
소말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민지배하 소말리아로부터 이주해간 사람들의 국민적 지위 또는 정치적 염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의정서 규정을 해석
스와지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제22조 및 34조 유보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조 4항 관련 Jersey, Southern Rhodesia 및 Swaziland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St. Lucia와 Montserrat를 적용대상 영토로 선언
탄자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해결 관련 제4조는 탄자니아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적용불가

국 명	유보 또는 선언요지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29조는 미국거주 난민에게만 적용하며, 미국 거주자가 아닌 난민에게는 세금부과 권한 유보 ○ 협약 제24조 1항(b)의 의무는 국내법인 사회보장법 II부(노령, 생존자 및 무능관련 보험)와 XVIII부(노령자의 병원·의료보험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수락
터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에서 발생한 난민에게만 적용 ○ 터키인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더 나은 대우를 난민에게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우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제7조의 강제성 부인 등 7조는 우간다가 자국의 국가이익상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판단하에서만 부여 ○ 협약 제8, 9조는 권고사항으로만 인정 ○ 협약 제13, 15, 16, 17, 25, 32조 유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전 문

체약국은,

국제연합헌장과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승인된 세계인권선언이 인간은 차별없이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음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이 수차에 걸쳐 난민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또한 난민에게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의 가능한 한 광범위한 행사를 보장하려고 노력하였음을 고려하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종전의 국제협정들을 개정하고 통합하고, 또한 그러한 문서의 적용범위와 그러한 문서에서 정하여진 보호를 새로운 협정에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고려하며,

난민에 대한 비호의 부여가 특정 국가에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국제적 범위와 성격을 가진다고 국제연합이 인정하는 문제에 관한 만족할 만한 해결은 국제협력이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하며,

모든 국가가 난민문제의 사회적, 인도적 성격을 인식하고, 이 문제가 국가간의 긴장의 원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하며,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이 난민의 보호에 관하여 정하는 국제협약의 적용을 감독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유의하고, 또한 각국과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과의 협력에 의하여 난민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의 효과적인 조정이 가능하게 될 것임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일반 규정

제 1 조

“난민”이라는 용어의 정의

A. 이 협약의 적용상, “난민”이라는 용어는 다음과 같은 자에게 적용된다.

(1) 1926년 5월 12일 및 1928년 6월 30일의 약정 또는 1933년 10월 28일 및 1938년 2월 10일의 협약, 1939년 9월 14일의 의정서 또는 국제난민기구헌장에 의하여 난민으로 인정되고 있는 자. 국제난민기구가 그 활동기간중에 행한 부적격 결정은 당해자가 (2)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당해자가 난민의 지위를 부여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1951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사건의 결과로서, 또한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

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및 이들 사건의 결과로서 상주국가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의 경우에, “국적국”이라 함은 그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가 각각을 말하며,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에 기초한 정당한 이유없이 어느 하나의 국적국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당해자에게 국적국의 보호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B. (1) 이 협약의 적용상 제 1 조 A의 “1951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용어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a) “1951년 1월 1일 전에 유럽에서 발생한 사건” 또는

(b) “1951년 1월 1일 전에 유럽 또는 기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각 체약국은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상기중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선언을 행한다.

(2) (a) 규정을 적용할 것을 선택한 체약국은 언제든지 (b) 규정을 적용할 것을 선택한다는 것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통고함으로써 그 의무를 확대할 수 있다.

C. 이 협약은 A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다음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이 중지된다.

- (1) 임의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또는
- (2) 국적을 상실한 후 임의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또는
- (3)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고, 또한 새로운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 (4)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는 공포때문에 정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밖에 체류하고 있었으나 그 국가에서 임의로 다시 정주하게 된 경우, 또는
- (5) 난민으로 인정되어온 근거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이 조항은 이 조 A(1)에 해당하는 난민으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한 이유로서 과거의 박해에 기인하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원용할 수 있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6) 국적이 없는 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되어온 근거사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종전의 상주 국가에 되돌아올 수 있을 경우. 다만, 이 조항은 이 조 A(1)에 해당하는 난민으로서 종전의 상주국가에 돌아오기를 거부한 이유로서 과거의 박해에 기인하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을 원용할 수 있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D. 이 협약은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의에 국제연합의 기관이나 또는 기구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자의 지위에 관한 문제가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결의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됨이 없이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의 부여가 중지되는 경우 그 자는 그 사실에 의하여 이 협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이익을 받을 자격이 있다.

E. 이 협약은 거주국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소유하는 데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F.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의 어느 것에 해당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a) 평화에 대한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대한 범죄에 관하여 규정하는 국제문서에 정하여진 그러한 범죄를 범한 자.
- (b) 난민으로서 피난국에 입국하는 것이 허가되기 전에 그 국가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범한 자.
- (c)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행한자.

제 2 조

일반적 의무

모든 난민은 자신이 체재하는 국가에 대하여 특히 그 국가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 및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에 따를 의무를 진다.

제 3 조

무 차별

체약국은 난민에게 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에 의한 차별없이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조

종교

체약국은 그 영역안의 난민에게 종교를 실천하는 자유 및 자녀의 종교적 교육에 관한 자유에 대하여 적어도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호의적 대우를 부여한다.

제 5 조

이 협약과는 관계없이 부여되는 권리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이 협약과는 관계없이 난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6 조

“동일한 사정하에서”라는 용어

이 협약의 적용상, “동일한 사정하에서”라는 용어는, 그 성격상 난민이 충족시킬 수 없는 요건을 제외하고, 특정 개인이 그가 난민이 아니라고 할 경우에 특정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충족시켜야 하는 요건(체재 또는 거주 기간과 조건에 관한 요건을 포함한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제 7 조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

1. 체약국은 난민에게 이 협약이 더 유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등한 대우를 부여한다.
2. 모든 난민은 어떠한 체약국의 영역안에서 3년간 거주한 후 그 체약국의 영역안에서 입법상의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를 받는다.
3. 각 체약국은 자국에 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에 상호주의의 적용없이 난민에게 이미 인정되고 있는 권리와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그 권리와 이익을 계속 부여한다.
4. 체약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정되고 있는 권리와 이익의 권리와 이익을 상호주의의 적용없이 난민에게 부여할 가능성과 제2항에 규정하는 거주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난민과 제3항에 규정하는 권리와 이익이 인정되고 있지 아니한 난민에게도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를 적용할 가능성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이 협약의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에 규정하는 권리와 이익 및 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권리와 이익에 관하여서도 적용한다.

제 8 조

예외적 조치의 면제

체약국은 특정한 외국 국민의 신체,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취하여지는 예외적 조치에 관하여, 형식상 당해 외국의 국민인 난민에 대하여 단순히 그의 국적만을 이유로 그 조치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제상 이 조에 명시된 일반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체약국은 적당한 경우 그러한 난민을 위하여 그 예외적 조치를 한다.

제 9 조

잠정 조치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전시 또는 기타 중대하고 예외적인 상황에 처하여, 특정 개인에 관하여 국가안보를 위하여 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잠정적으로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조치는 특정 개인이 사실상 난민인가의 여부, 또는 그 특정 개인에 관하여 불가결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인가의 여부를 체약국이 결정할 때까지에 한한다.

제 10 조

거주의 계속

1. 제2차 세계대전중에 강제로 퇴거되어 어느 체약국의 영역으로 이동되어서 그 영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난민은 그러한 강제체류기간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안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2. 난민이 제2차 세계대전중에 어느 체약국의 영역으로부터 강제로 퇴거되었다가 이 협약의 발효일 이전에 거주를 위하여 그 영역안으로 귀환한 경우 그러한 강제퇴거 전후의 거주기간은 계속적인 거주가 요건이 되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계속된 하나의 기간으로 본다.

제 11 조

난민 선원

체약국은 자국을 기국으로 하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으로서 정규적으로 근무중인 난민에 관하여서는 자국의 영역에서 정주하는 것에 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타국에서의 정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자국의 영역에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에 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 2 장 법 적 지 위

제 12 조

개 인 적 지 위

1. 난민의 개인적 지위는 주소지 국가의 법률에 의하거나 또는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2. 난민이 이미 취득한 권리로서 개인적 지위에 따르는 것, 특히 혼인에 따르는 권리는 난민이 체약국의 법률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르는 것이 필요한 경우 이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체약국에 의하여 존중된다. 다만, 문제의 권리는 난민이 난민이 되지 아니하였을 경우라도 그 체약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

제 13 조

동 산 및 부 동 산

체약국은 난민에게 동산 및 부동산의 소유권과 이에 관한 기타 권리의 취득 및 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및 기타의 계약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 14 조

저 작 권 및 산 업 재 산 권

난민은 발명, 의장, 상표, 상호 등의 산업재산권의 보호 및 문학적, 예술적 및 학술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보호에 관하여, 상주거소를 가지는 국가에서 그 국가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보호와 동일한 보호를 부여받는다. 기타 체약국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 난민의 상주거소를 가지는 국가의 국민에게 그 체약국의 영역에서 부여되는 보호와 동일한 보호를 부여받는다.

제 15 조

결 사 의 권 리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역안에 체재하는 난민에게 비정치적이고 비영리적인 단체와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 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중 가장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

제 16 조

재 판 을 받 을 권 리

1. 난민은 모든 체약국의 영역에서 자유로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난민은 상주거소를 가지는 체약국에서 법률구조와 소송비용의 담